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14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71	이만희의원	'25.11.03.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1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2213877	이만희의원	'25.11.04.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1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 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 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

12조의2).

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p> <p>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p> <p>1. (생 략)</p> <p>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u>필요한 기술지원</u> 및 지도·자 문 사업</p> <p>3. ~ 5. (생 략)</p> <p>③ (생 략)</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p>	<p>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 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⑤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